공직선거법위반

[대법원, 2006.12.21, 2006도7087]

【판시사항】

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’ 의 의미

【판결요지】

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’ 와 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’ 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, 여기서 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’ 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· 친지 · 친구 · 직장동료 · 상하급자나 향우회 · 동창회 ·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·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.

【참조조문】

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외 4인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본다.

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,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없으며,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의 제공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인정되지 않고,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홍훈(재판장) 대법관 김영란(주심)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